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969
------------	------

2017년 9월 1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8월 14일, 시장

나.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7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7년 9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본부장 고흥석)

가. 제안이유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실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자문제도 체계를 보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교통소통 대책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통현황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장기간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안 제4조)
- 실효성 높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위해 공사규모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시기를 구분함 (안 제4조)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교통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으로 확대 변경함 (안 제8조)
- 도로점용공사 완료 시점의 교통현황을 반영한 도로복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 조항을 추가함 (안 제13조)
- 교통소통대책 결과물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공사단계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및 대행자의 준수 사항을 추가함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법 시행령 별표2의 4호

나. 예산조치 : 총 29백만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계		29,214천원	
주요내용 다 관련 (서울형 생활임금제 임금)	· 1,623천원×2명×9개월	29,214천원	보험료 포함

※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예산 (서울형 생활임금제 임금 기준)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수정의결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의견없음

※ 예산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1조)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

○ 기 간 : 2017. 4. 13 ~ 2017. 5. 2

○ 제출의견 : 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동수)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또는 대규모 공사에 대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이하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의 수립시기 및 방법을 개선하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자 기준을 확대하며, 공사 후 원상회복을 비롯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 의견

■ 장기간, 대규모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개선(안 제4조 관련)

- 안 제4조(교통소통대책이 수립 등)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경우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는 교통량, 주변 도로여건 등 교통현황이 초기 교통 현황과는 달라진 경우가 빈번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연도별로 나누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의 경우¹⁾ 현재와 같이 설계완료 후 교통소통대책을 상정할 경우 장기작업장 이전 및 점용면적 축소 등의 자문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²⁾과 서울시 건설공사 매뉴얼³⁾에 따르면 실시설계

1)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 2016년 기준 전체 15% 차지

수립시 교통처리계획도 제출과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시설계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교통소통대책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소통대책 이행 확인 점검자 자격 확대 및 임금지급 근거 마련 (안 제8조 관련)**

○ 안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 인력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고 급여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수의 담당공무원만으로 연간 120여건에 이르는 도로점용공사장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교통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를 교통소통대책 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 3항 실시설계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01호로 개정·고시

- 제3장(기본설계 등 시행에 관한 사항) 제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를 근거로 설계 도서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토목:일반사항·도로·철도·항만)

- 3장 기본설계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와 분석, 평가

- 4장 4.5 성과품 작성기준으로 **교통처리계획도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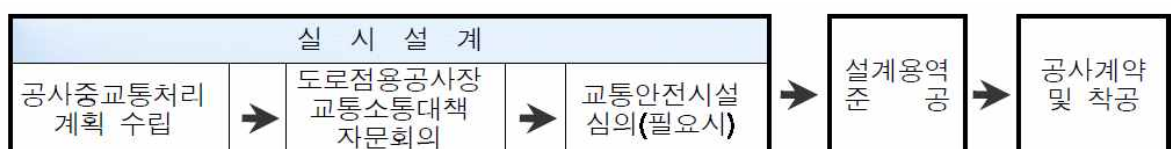
2)

3)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매뉴얼(2014.07) 제4장 설계단계

《 4장 6.3 실시설계 용역추진시 고려사항 》

1.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공사는 공사 시행시 필요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발주

2. 업무 절차도 및 유의사항



여부 점검자로 운영하고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교통소통대책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원상회복 관련 규정 신설(안 제13조 관련)

- 안 제13조(원상회복)은 공사완료 후 보고서 제출 및 공사 완료 후 통행의 불편이 되는 요소가 발생할 경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법⁴⁾에 따르면 도로점용에 따른 공사를 마치면 설계도면 및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준공확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원상회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원상회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완료시점의 주변 교통여건을 반영토록 교통안전시설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완료 후 원상회복의 질을 높이는

4) 도로법

제73조(원상회복) ①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생략)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생략)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2항(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이하 "지하시설물도"라 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원상회복 보고서 제출 및 교통안전시설 변경이 정책취지와는 다르게 정상적인 설계변경 이후 추진해야 될 공사가 동 개정안에 따라 변경절차 없이 추진되어질 경우 공사 시행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실제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고서 작성 및 교통안전시설 변경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임

■ 자료제출 규정 신설 등(안 제14조 관련)

- 안 제14조(사업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은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의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현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최종자료를 책자로 관련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사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자료의 분실 우려 등, 관리상태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전자적 형태의 자료 수합을 통해 도로점용공사에 대한 DB구축을 통해 관리강화는 물론 공사에 대한 체계별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안 제2조(정의), 안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안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상위법 반영 및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바, 이는 조례의 이해도 제고 및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14조”로 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 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조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 중”을 “사람 중”으로 한다.

제11조 중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를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로 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원상회복) 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각 호-----.
1. “도로”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도”를 말한다.	1. ----- 「도로법」 제14조-----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 ----- ----- ----- ----- .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u>교통행정분야의 공</u>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p>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p>	<p>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p>
<p><신 설></p>	<p>1. <u>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u></p>
<p><신 설></p>	<p>2. <u>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u></p>
<p><신 설></p>	<p>② <u>제8조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u></p>
<p>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p>	<p>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p>	<p>② ----- ----- ----- 사람 중 -----.</p>
<p>1. 2. (생략)</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 ⑧ (생략)</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p>	<p>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 ----- -----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p>
<p><신 설></p>	<p>제13조(원상회복) ① 공사를 시행한</p>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공사시행자 및 대행자의 준수 사항) ① 공사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